[2018 복지송파를 위한 매니페스토위원회]가 제안하는

10대 “좋은 공약”

좋은 공약 1. 민관협치 조례 제정

좋은 공약 2. 옴부즈맨 조례 제정

좋은 공약 3. 장애인전담부서 승격 신설

좋은 공약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좋은 공약 5. 장애인 복합자조모임 공간 지원

좋은 공약 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좋은 공약 7.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좋은 공약 8.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좋은 공약 9. 농아인 쉼터 지원

좋은 공약 10.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좋은 공약’ 1 – 민관협치

<table>
<tr><td>공약명</td><td>‘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td></tr>
<tr><td>제안배경</td><td>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가 절실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은 주민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임.
이를 위해 송파구민은 누구나 송파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래와 같음(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table>
<tr><th>시/자치구</th><th>조례공포일</th><th>추진체계(담당부서)</th></tr>
<tr><td>서울특별시</td><td>2018.3.22</td><td>민관협력담당관</td></tr>
<tr><td>강동구</td><td>2018.2.14</td><td>기획예산과</td></tr>
<tr><td>강서구</td><td>2017.6.7</td><td>자치행정과</td></tr>
<tr><td>관악구</td><td>217.4.6</td><td>기획예산과</td></tr>
<tr><td>금천구</td><td>2017.3.13</td><td>지역혁신과</td></tr>
<tr><td>도봉구</td><td>2016.12.29</td><td>지속가능발전과</td></tr>
<tr><td>동대문구</td><td>2018.4.47</td><td>도시전략과</td></tr>
<tr><td>동작구</td><td>2018.3.2</td><td>기획예산과</td></tr>
<tr><td>서대문구</td><td>2017.5.31</td><td>정책기획담당관</td></tr>
<tr><td>성동구</td><td>2017.7.13</td><td>기획예산과</td></tr>
<tr><td>성북구</td><td>2018.3.29</td><td>마을민주주의과</td></tr>
<tr><td>영등포구</td><td>2017.6.1</td><td>기획예산과</td></tr>
<tr><td>은평구</td><td>2017.3.16</td><td>민관협치담당관</td></tr>
</table>
</td></tr>
<tr><td>제안내용</td><td>
- 이를 위해 민관합동 협치T/T구성,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체계 진단, 협치학교 운영, 의제 우선순위 도출 토론회, 공론장 개최, “협치송파구회의” 구성, 분야별 협치 사업 구체화 등을 진행함.
- 송파구정의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을 둠.
</td></tr>
</table>

‘좋은 공약’ 2. 옴부즈맨

공약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옴부즈맨조례’ 제정**
제안배경	국가기관에 대한 합법성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있고 합목적성 권고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감사부서만 있고 권고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지역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구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서울시는 별도 독립기구로 옴부즈맨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구로구는 구청장까지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과거 송파구는 민원도우미 수준의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송파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옴부즈맨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옴부즈맨이란?**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 쓰임 **옴부즈맨(ombudsman)제도**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음.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 · 안내, 민원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제안내용	-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구로구, 서대문구, 강동구, 관악구, 마포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동작구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사 및 감사 권한을 부여한 곳은 서울시와 구로구임. - 구로구형 옴부즈맨조례 제정을 제안함.

‘좋은 공약’ 3. 장애인전담부서 승격

공약명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승격 신설**
제안배경	- 2017년 송파구 등록장애인 수가 남자 11,876명, 여자 11,670명, 총 19,790명으로 25개자치구 중 6번째로 많으며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지구, 송파헬로우시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유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전담인력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임 (보건복지부, 2018) - 현재 서울시에는 강동구(장애인복지과), 광진구(어르신복지과), 도봉구(노인장애인과), 노원구(장애인지원과), 은평구(장애인복지과), 강서구(장애인복지과), 관악구(장애인복지과), 마포구(어르신복지장애인과), 성동구(어르신장애인복지과) 등의 자치구가 개별과로 승격 설치되어 있음
제안내용	- 장애인복지과 승격 신설 - 장애인복지 전담인력의 확충 및 장애유형별 상설협의체 운영

‘좋은 공약’ 4.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공약명	**‘송파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제안배경	-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가족의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장애인가족상담과 사례관리, 비장애형제지원, 긴급돌봄,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광역지원센터 1곳을 비롯해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등 총 6곳에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20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 설치 예정
제안내용	- 송파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구 예산 7천5백만 신규 편성 - 비장애가족 대상 장애이해 메뉴얼 제작 - 지역사회 병의원 협약을 통한 장애인가족지원 로드맵 마련

‘좋은 공약’ 5. 장애인 복합자조모임 공간 지원

공약명	**장애인 복합자조모임 공간 지원**
제안배경	- 송파구에는 2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공간이 부족하지만, 현재에는 뇌병변장애인 중심의 방이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등 3곳 뿐. - 따라서, 9호선 개통으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이 용이한 송파구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내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복합자조모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자조모임(self-help meeting)이란?** 동료장애인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제안내용	- 송파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복합자조모임 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유형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좋은 공약’ 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공약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확보**
제안배경	- 2017년부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5개 자치구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저인금 시간당 단가가 9,240원에서 10,760원으로 증액되어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의 추가예산 5천만원이 부족함 **주간활동서비스란 (day activity service)란?**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체육, 직업, 취미, 학습 등의 의미있는 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안내용	-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5천만원 추가 편성

‘좋은 공약’ 7.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공약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제안배경	-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 - 현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예산 배정과 실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요구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송파구 등을 제외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구마다 특화된 실제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여 실행하고 있음 -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
제안내용	- 발달장애인전담 TF팀 정기적 간담회 개최 - 송파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좋은 공약’ 8.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약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제안배경	- 인근 자치구들도 장애인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재활, 교육, 여가 등을 한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제는 송파구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유형별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내용	- 특정한 개별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센터와는 달리 다양한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이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송파구내 약 2만여명의 등록장애인에게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임.

‘좋은 공약’ 9. 농아인 쉼터 지원

공약명	농아인 쉼터 조성, 공공일자리 확대
제안배경	ㅁ **농아인 쉼터 마련** - 장애특성상 의사소통 문제로 일반 복지시설 이용이 어렵고 고령인구 비율이 70%인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 쉼터의 필요성이 절실함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02호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 대책에 의거하여 2017년부터 자치구에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는바, - 중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양천구, 성북구는 자치구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미 쉼터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자치구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송파구도 농아인 쉼터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ㅁ **농아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센터 수화통역사 배치** -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음 - 송파구 또한 2014년 송파구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 2020”을 통해 저소득층의 공공일자리를 약속했으나 농아인 고용비율은 극히 미비함.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가정에 있는 농아인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 송파구행복나눔일자리센터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어느 곳에서도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농아인은 취업상담조차 받지를 못함. 이에 수화통역사가 상주하여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교육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제안내용	- 농아인 쉼터 조성 - 농아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센터 수화통역사 배치

‘좋은 공약’ 10.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공약명	**장애인 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증액**
제안배경	**ㅁ 송파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예산 동결** 송파구는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동, 전동휠체어 등과 같이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이동편의와 사회참여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2014년 조례제정 이후 송파구예산서에 따르면 근 3년(2016년~2018년)간의 송파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예산은 300,000원*100명=30,000천원으로 동결되었음. **ㅁ 송파구 지체, 뇌병변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가 필요한 장애유형인 지체, 뇌병변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서울통계표에 따르면 송파구 장애인 인구수는 14년 12,110명, 15년 11,782명, 16년 11,482명으로 집계됨. 장애인보장구가 필요 없는 경증장애인을 감안한다고 해도 예산산출식의 100명으로는 서비스의 효과성이 적음.
제안내용	-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여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존하며 보다 자유로운 이동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30% 이상의 현실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함. - 이에 제5조(지원기준) 3항 1호의 제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30%증가한 39만원으로, 3항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한 연간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의 증액이 필요함.